

2020年04月08日

馬場国際特許事務所

弁理士 馬場 資博 先生

事務ご担当 平瀬 様

WOOIN PATENT & LAW FIRM  
2Fl., Jungpyeong Bldg., 157 Yeoksam-ro,  
Gangnam-gu, Seoul 135-925, Korea  
Tel : +82-2-541-9841 / Fax : +82-2-541-9842  
E-mail : info@wooinlaw.com  
patent@wooinlaw.com  
trademark@wooinlaw.com  
account@wooinlaw.com  
www.wooinlaw.com

件名 : 韓国商標登録出願第40-2019-0091428号に対する登録決定書受領報告の件

商 標: **Passiv Energie**

区 分: 第11類

出願人: ドイツINGER クリスティアン

貴所整理番号: BT190051KR

弊所整理番号: M19-1579

拝啓 貴所の益々のご清栄のこととお慶び申し上げます。

上記の韓国商標登録出願に対し、韓国特許庁から2020年04月06日付の登録決定書を受領しましたので、ご報告申し上げます。

登録料は、登録決定書の受領日より2ヶ月以内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ず、納付期間を延長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追加費用の支払いによりさらに30日まで延長することが可能です。商標登録証は、通常登録料納付後、約1ヶ月以内に発給されます。

なお、上記韓国商標登録出願に対する登録料納付期限は **2020年06月06日まで**であり、これに係る費用は、次の通りであります。

項目	印紙代 (USD)	代理人手数料 (USD)
登録費用	185	180
諸経費	-	-
小計	185	180
<b>合計</b>	<b>365</b>	

(上記印紙代は為替レートにより変動することがございます。)

また、本件に対する登録決定書の写しを添付致しますので、ご検討の上、登録料納付可否について **2020年05月22日まで**にご連絡いただきたく存じます。

その他、本件に関しまして、ご不明な点・ご質問等がございましたら、ご遠慮なくいつでもご連絡下さい。

敬 具

特許法人WOOIN

弁理士 李 龍鎮



添付書類 : 登録決定書の写し 1通

발송번호: 9-5-2020-024677622  
発送日付 발송일자: 2020.04.06.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57, 2층(역삼동, 중평빌딩)(특허법인우인)  
특허법인우인[최성우] 귀하(귀중)

06246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등록결정서 登録決定書

ドイティンガー クリステイアン

出願人 출 원 인 성 명 도이팅가 크리스티안 (특허고객번호: 620180257339)  
주 소 일본 도쿄도 시나가와쿠 기타 시나가와 3-6-13  
代理人 대 리 인 명 칭 특허법인우인 特許法人WOOIN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57, 2층(역삼동, 중평빌딩)(특허법인우인)  
지정된변리사 최성우 외 2명

出願番号 출 원 번 호 40-2019-0091428  
商品区分상 품 류 제 11 류 第11類

이 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결정합니다.

※ 상표권은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

참고 : 상표견본이미지

Passiv Energie

(※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번호 : 40-2020-0005127

광고일자 : 2020.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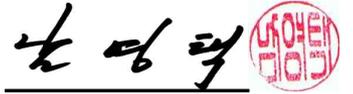
2020.04.06.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생활용품상표심사과

심사관 남영택



<< 안내 >>

1. 등록료 및 등록세 등의 납부 마감일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이며, 기간내 납부 기간연장 신청을 하시면 추가 30일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납부 기간연장신청을 하시는 경우 2만원의 기간연장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함). 동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추가납부기간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료 및 등록세 등
  - 등록료 일시납부시 : 211,000원(상품류구분 1개류마다 211,000원이며, 2012. 4. 1. 출원 건부터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함)
  - 등록료 분할납부시 : 1회 및 2회 각각 132,000원(상품류구분 1개류마다 각 회차별 132,000원이며,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함)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9,120원은 등록료와 함께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상품 추가등록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없음

※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정보 :총 1개류 [ 제11류 (14개)]

【 분할납부제도 안내 】

- ① 2010. 7. 28. 출원 건부터 상표등록료의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단,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분할납부 대상이 아님).
  - 기존 : 10년 1회 일시납부 → 변경 : 10년 1회 일시납부, 5년 2회 분할납부 중 선택납부가능
- ②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서식 제25호)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납부회차란을 '1회차'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증 발급 】

2018. 7. 1. 설정 등록부터 전자등록증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서 「전자등록증 신청」을 사전에 하거나,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서식 제25호)에 등록증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하면 「전자등록증 수신함」을 통해 전자등록증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등록증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 해외출원 안내 】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행사(생산, 판매 등) 또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상표를 등록받으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과 관련한 등록결정서 발송 안내 】

2017년 4월 1일부터는 특허고객번호, 대리인번호의 (통지서)수취방법이 온라인수령인 경우 이의결정에 따른 등록결정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전자문서로 발송된 통지서를 일주일 이내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표권 설정등록 등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허로」 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 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www.ipacademy.net](http://www.ipacademy.net))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이 통지서 결정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042-481-5285(담당심사관 남영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